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15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조경태·서천호·곽규택

이헌승 · 김용태 · 서지영

김소희 · 김예지 · 강명구

서범수 · 유용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·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, 사업 대상 지역(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)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 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

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,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,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
-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인·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·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	제8조(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		
역의 지정 해제 등) ① 농림축	역의 지정 해제 등) ①		
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			
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			
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			
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	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		
	<u>공고를 한 경우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		
	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		
	된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인		
	<u>·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</u>		
	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한다.		